

결 정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6

언 론 사 주식회사 김천신문사(주간 김천신문)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91, 2층
대표이사 이길용

심의대상기사 1. 2025년 2월 13일자 1면 「김천시장 재선거」 배낙호 예비후보 지지층 결
집에 탄력 붙을 듯」 제하의 기사
2. 2025년 2월 27일자 1면 「4.2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경
선 승리」 제하의 기사
3. 2025년 3월 6일자 7면 「국민의힘 공천 경선 승복하고 함께 뭉쳐야!」 제
하의 칼럼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경상북도 김천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사진과 함께 1면 상단에 게재하여
부각 보도함과 동시에 타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사용
한 칼럼을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
거기사) 제1호,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제2호를 위반한 것으
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선거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내·외부 필진의 의견(칼럼, 기고 등을 포함한다)을 게재한 경우

결 정

-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7
- 언 론 사 대전투데이 주식회사(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대표이사 김현정
- 심의대상기사 1. 대전투데이 2025년 2월 12일자 02면 「전만권 후보, 아산시민 염원 실행
력 있는 추진 약속」 제하의 기사
2. 대전투데이 2025년 2월 21자 02면 「전만권, 시민과의 소통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 제하의 기사
3. 대전투데이 2025년 2월 24일자 02면 「전만권 예비후보 ‘아산시민과함께
미래로’ 비전 선포식 성료」 제하의 기사
4. 대전투데이 2025년 3월 11일자 02면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지금
부터 준비해야”」 제하의 기사
5. 대전투데이 2025년 3월 21일자 02면 「깨끗한 후보 국민의 힘 전만권,
20일 출정식 개최」 제하의 기사
-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충청남도 아산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기자회견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
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는 등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
사)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회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결 정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8

언 론 사 주식회사 열린미디어그룹(열린뉴스통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광화문 오피시아빌딩) 1127호
대표이사 조성원

심의대상기사 [별지1] 기재

주 문 1.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를 명한다.
2. 주식회사 열린미디어그룹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열린뉴스통신 홈페이지(<https://www.onews.tv>) 전국·부산/울산/경남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별지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선거기사심의 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을 고정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의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단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심의대상기사 제목과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산시 교육감)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출마 소식 및 동정, 기자회견 등을 홍보 이미지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는 등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② 선거기사의 편집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근거 없이 정당 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제7조(일반 선거기사) 선거기사로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사의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부각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논평,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또는 홍보 이미지(명함, 포스터, 출판물 등)를 그대로 게재하여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지1] 심의대상기사

1. 열린뉴스통신 2025년 2월 24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예비후보, ‘진짜가 나타났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
2. 열린뉴스통신 2025년 2월 27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예비후보 공약 1호,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제하의 기사
3.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4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중도보수 예비후보, 부산교육감재선거 여론조사 ‘우세」 제하의 기사
4.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4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예비후보, “학생을 자유의지·지혜·용기 가지도록 키울 것”」 제하의 기사
5.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5일자 부산/울산/경남면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중도·보수 후보 4자 단일화 ‘성사」 제하의 기사
6.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6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예비후보, “부산교육의 미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다”」 제하의 기사
7.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7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예비후보, “내란조작·광란재판·가족회사 국민앞에 벗겨 질것”」 제하의 기사
8.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9일자 부산/울산/경남면 「“부산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중도보수 단일후보 ‘정승윤’ 선출」 제하의 기사
9.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12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예비후보, “보수의 가치와 교육현장은 공정이다”」 제하의 기사
10.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13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자유시민부산연합, ‘부산교육 변화 이끌 책임 자’ 정승윤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
11.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14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후보, “북한찬양 세력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제하의 기사
12.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15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후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제하의 기사
13. 열린뉴스통신 2025년 3월 15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후보, 부산교육감 중도·보수 승리위해 대승적 결단」 제하의 기사

[별지2]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 뉴스통신은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산시 교육감)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출마 소식 및 동정, 기자회견 등을 홍보 이미지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 (2025년 2월 24일자 부산/울산/경남면 「정승윤 예비후보, ‘진짜가 나타났다’ 부산시교육감재 선거 출마 선언」 등 13개)한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다루지 않음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정성 및 형평성) 제2항 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결 정

의 결 번 호 2025년 상반기 재보선-자심9

언 론 사 주식회사 아산미래신문(아산미래신문)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65번길 32(온천동) 3층
대표이사 윤순기

심의대상기사 1. 아산미래신문 2025년 2월 14일자 20면 「전만권 아산시장 예비 후보, 경
찰병원·제 2중앙경찰학교 신속 유치...행정력 집중」 제하의 특집기획기사
2. 아산미래신문 2025년 2월 28일자 20면 「전만권 아산시장 예비 후보, ‘역
동적인 아산, 시민과 함께 미래로’ 비전 선포식 성료!!!」 제하의 특집기획
기사
3. 아산미래신문 2025년 3월 14일자 20면 「전만권 아산시장 예비후보, ‘막
힘없는 도시, 편리한 교통, 신성장 거점 콤팩트시티’ 공약 발표」 제하의 특
집기획기사

주 문 위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위 언론사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충청남도 아산시장)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의 동향 및 공약 등을 담은 특집기획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
과 함께 실어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정보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제1항 제1호 및 제11조(특집기획기
사칼럼 및 기고 등)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4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3. 24.

선 거 기 사 심 의 위 원



관 련 규 정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① 선거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11조(특집기획기사·칼럼 및 기고 등) 특집기획기사, 칼럼 및 기고 등에서 불공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한 경우